

선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김보라*

◆ 목 차 ◆

1. 서 론
2. SNS가 가지고 있는 특성
3. 발전된 디바이스와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정치참여
4. 현재의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정치활동의 제약들
5. 결 어

1. 서 론

얼마 전 트위터를 이용해 낙선운동 대상자명단을 게시한 일반인이 선거운동기간전에 낙선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인 행위임을 판단함에 있어, 첫째, 트위터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수의 의견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 인터넷 카페나 싸이, 블로그보다 훨씬 개방적이며 영향력이 크다는 점, 둘째, 피고인이 게시판 글의 내용은 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정당소속국회의원 19명을 낙선운동 대상으로 지목하고 해당선거구를 적시하고 비하하거나 인신공격적인 문구까지 추가하고 있어 단순한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 반대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셋째, 19건의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였다는 점, 넷째, 팔로어로 등록된 수가 14,000명 정도로 다수라는 점, 다섯째, 트위터에 공개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고양지 원 2011고합127)

하지만, 위 판결에서 행위자의 영향력과 19건의 트윗행위만으로 가장 높은 단계의 의도와 인식을 가져야 하는 “목적법”의 목적을 인정한 법적 문제점을 차

치하고서도, 법원도 선거법 해석을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해석해야 할 정도로 공직선거법이 오늘날 그 적용에 있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 선거운동의 범위가 다양한 의사표현의 방법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오늘날에는 적합하지 않게 된 것이다.

공직선거법이 가지고 있는 애매모호함은 최근 이루어진 보궐선거과정에서 선관위가 보여주었던 인증샷 등에 대한 기준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행위들을 통해 극명히 드러난 바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당일 금지행위에 대한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트에서 공지하자(http://www.nec.go.kr/nec_new2009/Board/CotBySeq.do) 선관위가 인증샷지침을 소재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인증샷 놀이로 비난을 풍자로 승화시키기도 하였다.

아래에서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고 한다.)의 특성에 대한 기존의 문헌조사들과 최근의 재보궐선거과정에서의 현상관찰을 통하여 검토함으로써 현행 공직선거법이 충돌되고 있는 지점을 분석한다.

2. SNS가 가지고 있는 특성

스미스(2007)는, ①온라인 상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유일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 ② 자신의 상태가 온라인

*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인지 오프라인인지 상대방이 대화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존재감’, ③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 간의 관계를 맺고 이를 시스템에 축적할 수 있는 ‘관계’, ④ 시스템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으로 이메일이나 쪽지, 채팅, 메신저 같은 형태인 ‘대화’, ⑤ 과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며 믿을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평판’, ⑥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이 콘텐츠들을 시스템 안에서 사용자들끼리 공유하거나 추천, 배포 등을 통해 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공유’, ⑦ 흥미나 기타 목적을 기반으로 형성된 커뮤니티 형태인 ‘그룹’을 소셜 소프트웨어의 7가지 특성으로 들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인 주체를 구성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SNS에서의 각 참여자의 성격을 규정하는데에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 (권상희, 2011) 각 SNS는 위 특성들을 배경으로 특히 강조되는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되어 왔다.

위 특성중 ‘관계’, ‘대화’, ‘평판’, ‘그룹’이라는 특성은, 어느 기간 동안의 관계 맺기를 통한 느슨한 형태의 ‘신뢰형성’을 네트워크에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신뢰형성은, 기존의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상의 커뮤니케이션과 다른 차원에서의 유대감과 신뢰감이다.

이러한 유대감과 신뢰감은, 스마트 기기와 결합된 SNS를 통하여 단순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보의 속도감 있는 유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구태의연한 홍보성 정보들이 아니라, 신선하고 가치 있고 센세이셔널하며, 이해관계 있는 재미있는 정보들의 유통이 신뢰 관계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순환하게 된다. 권상희(2011)는,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 미디어에 대하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보력을 가진 모바일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고 보면서, 실시간 소통이 증가하면서 여론 형성 및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저변과 속도도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실제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댓글서비스들은, 기존의 신뢰나 유대감없는 상태에서의 댓글과

는 달리 논의와 상관없는 비속어가 줄고, 주제에 집중된 발전된 공론장으로서의 모습이 가능한 점을 보여준 바 있다. 참여자간에 SNS를 통한 유연하면서도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네트워크”는 재차 신뢰와 유대를 강화시켜 주며, 스마트 기기를 통하여 그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은 협력적이며 생산적인 공론장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이다. 권상희(2011)는, 동질성이 강한 사람들을 있고 있는 결속형 네트워크에서는 “두터운 신뢰”가 유지되며, 이렇게 형성된 결속형 사회자본은 관계 내부의 결속과 신뢰가 강하고 협력행동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SNS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마치 앞서 말한 속도감 있는 영향력이 매스미디어가 일반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처럼 이해되거나, 사적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진 일부 잘못된 정보의 흐름의 과도한 유연비어처럼 보일 수도 있다.** SNS에서 이용자가 제공하는 영향력은 SNS가 “평판과 신뢰”에 기초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스미디어와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다. 정보의 생산, 재생산, 유통 과정에서 네트워크안에서 납득할 수 없는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임이 밝혀지면 그러한 정보를 유통한 이용자에게는 정정 피드백이 도달하거나, 더 이상 신뢰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관계가 단절되는 재제조치가 따르고, 재차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정보 역시 급속도로 함께 유통된다. 관계가 단절되는 재제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자의 영향력 역시 감소되기 때문에 SNS의 표현은 사회적 제재수단이 결부되었다는 점에서 상호간의 신뢰를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기가 쉽다.

SNS에서의 이러한 정보의 유통경향은, 돈과 권력에 의하여 혼탁해져가고 있는 전통적 미디어 또는 유

금은 대부분의 미디어서비스에서 소셜댓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bloter.net/archives/35224>)

** 조선일보는 2011. 11. 7.자 사설에서 “트위터, 이대로 가면 언어테러의 흉기다”라고 SNS가 괴담유포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2011. 11. 8. 대검 공안부장등이 참석한 공안대책 회의에서는 “한미 FTA 관련 SNS 괴담유포”를 구속수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하여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오히려 공안대책회의 결과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저해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 연세대 학생 벤처기업 시지온에서 개발한 라이브리(LiveRe) 서비스를 기반으로, 블로터닷넷이 인터넷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하여 게시판서비스인 댓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최초로 소셜댓글을 활용한 이래 지

사 미디어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정보와는 차별적으로, 정보의 흐름이 더 이상 돈과 권력을 매개하지 않고도 신뢰관계에 의존하여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3. 발전된 디바이스와 SNS를 통한 정치 참여

SNS는 최근 데이터무제한요금제 등으로 데이터요금의 부담이 적어지고, 아이폰 등과 같이 손으로 터치를 하는 방식의 동작이 쉬운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급속한 대중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SNS는 소통이라는 1차적 목표를 벗어나 오프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2차적 목표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상희(2011)도, 스마트 미디어와 SNS의 결합은, “유권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1차적으로는 정치인과 직접 소통하지만, 의제를 설정하고 실제 정치참여나 투표를 2차 활동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SNS를 통한 정치참여는, 빠른 속도의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과정에 이용자가 참여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데, 그 모습은, 과거 ‘직접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미미했던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유권자와 공직후보자간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후보자는 유권자 중의 한 명이라는 정치적인 의미가 실질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신뢰와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신뢰와 평판에 기초한 SNS의 대중화는 정치참여과정에서 시간적, 금전적, 기술적 장벽을 허문 이상적인 공론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그동안 구현하고 싶었던 진입장벽없는 ‘신뢰’에 기초한 소통을 통한 정치참여를 폭넓게 가능케 해주는 톨로서 등장한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표현축진적인 인터넷상의 특성에 기초한 커뮤니티들을, 네트워크화된 공론장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단대단 원칙, 비용장벽 및 지리적

차별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설명*하기도 하였지만, SNS는 느슨하면서도 친밀하면서도 신뢰에 기초하였다는 점에서 그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정서적으로 강한 연대의 ‘주된 네트워크’와 보완적인 ‘약간 네트워크’의 균형잡힌 모습을 가지적으로 구현시켰다는 점에서 단순한 네트워크, 위계적인 카페, 개인 미디어인 블로그와도 성격이 다르다. 권상희(2011)은, 소셜 서비스에서 관심사를 바탕으로 새롭게 찾고 만난 사람 및 그 관계는 주로 약한 연대의 커뮤니케이션이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강한 연대의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 (권상희, 2011)

SNS상에서의 선거 등의 공적 행위에 대한 논쟁은, 강한 연대의 주된 네트워크와, 약한 연대의 보완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2차적으로 오프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으로 발전한 점은, 재보궐 선거에서 여러 정후로 나타난 바 있다.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정보제공, 투표독려, 투표 인증샷 등의 선거참여활동들은, 위치정보시스템과 결합된 SNS를 활용하여 강화되었으며, 선거날 투표 트윗글이 5배 이상 증가한 바 있다.** 이러한 SNS에서의 정치참여현상에 부응하여, 10. 26. 보궐선거당시에는 포털 사이트 다음은 아고라사이트에서 직접 투표인증샷을 위치정보와 함께 올릴 수 있는 서비스(<http://agora.media.daum.net/event/byelections>)를 제공하기도 한 바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SNS의 대중화는 더 이상 소통 그 자체 보다는 2차적으로 오프라인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방법이 없어 진화되지 못한 민주주의의 모습들은, SNS의 도입으로 직접민주주의의 요소가 강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참여는 일상의 모습과 연결되고 있다.

* Yochai benkler, “the wealth of networks(2006)”

** “4·27 재보선과 SNS 참여의 의미”, 김유향, 조희정, 이슈와 논점 제230호, 2011. 5. 4.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4. 현재의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선거참여에 있어서의 제약들

이처럼 네트워크상의 표현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SNS를 통한 정치참여는, ‘정치표현’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그 위법과 적법의 판단이 애매모호할 수 밖에 없다. 10. 26. 재보궐선거에서 선관위가 고심 끝에 내놓은 ‘선거당일 해서는 안되는 선거운동에 대한 Q&A’는 그러한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의 어려움이 담겨져 있다.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공직선거법 제59조, 제93조, 254조)하고, 인증샷 등을 제한하는 표현행위의 대한 광범위한 제한, 단순 비방기준은 아무런 범죄의식이 없는 SNS를 활용하는 유권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10. 26 재보선에 나타난 SNS 문화와 선거제도의 과제, 김유향, 조희정, 이슈와 논점, 제315호,)

과거 사적인 의사표시가 ‘공론장’과 결합되지 않았던 시기의 법원판결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낙선과 당선’의 개념을 매우 넓게 해석하여 왔다. 최근 고양지원에서 나타난 유죄판결 이유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용자가 영향력이 있고, 반복적인 글을 올렸다는 측면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SNS의 사적인 네트워크적인 성격은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일상의 이는 사람들과 술자리에서 또는 친목도모의 자리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그들의 뒷담화를 한 것이, 공직선거법위반이 된다면 그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할 것이다. SNS에서 일반유권자들의 네트워크는, 이러한 오프라인에서의 그것이 온라인에서 확장되어 나타난 사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오프라인과 달리 ‘영향력’만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면 공직선거법이 지향하는 ‘부정방지’와는 무관하게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만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 오히려 과거인 2002년보다 온라인 선거 캠페인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선거법 93조 1항과 ‘선거UCC 운용기준’에 의한 지나친 규제였음이 지적된 바 있다. (윤성이, 2008)

그러나, 이러한 공직선거법이 필요적절하게 개정되

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 현재 선출되어 있는 공직자들은 이러한 SNS의 성격 및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SNS를 통한 공론장에 자유자재로 참여하며 오프라인에까지 영향을 주는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공직 후보자들은 여전히 소셜네트워크를 기존의 전통적인 매체를 대하는 모습과 유사하게 대처한다. (김유향, 조희정, “4·27 재보선과 SNS 참여의 의미”, 이슈와 논점 제230호, 2011. 5. 4.) 김혜성(2011)의 정치인들의 트위터 메시지분석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치인들은, 기존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쏟아내기’ 및 ‘뺏어내기’의 형태로 활용하고 있을 뿐 소셜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라는 특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4. 27. 재보궐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은 SNS 정치참여를 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활용하기 위하여 미디어팀, SNS특보를 임명하고 홍보에만 주력할 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활용하지는 않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이처럼 현재의 모순적인 법을 개정해야 할 입법자들이 변화된 디바이스와 플랫폼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은 문제의 해결을 쉽지 않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소셜네트워크 명망가나 홍보전문가가 아니라, 이 네트워크 안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행동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보의 흐름과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5. 결 어

선거란, 다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승자가 되는데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확인하고, 발전하는 논쟁을 통해 아직 미약한 소수의견들의 희망들도 엿볼 수 있는 민주주의의 축제이다. 자신만의 경험 안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과도 공존해야 하는 사회라는 자각을 심어 줄 수도 있고, 나이든 세대는 어린 세대의 절박

* 김유향, 조희정, “4·27 재보선과 SNS 참여의 의미”, 이슈와 논점 제230호, 2011. 5. 4.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한 요구를, 어린 세대는 나이든 세대의 가치의 차이를 인식할 수도 있다. 다수결에 따라 다수가 원하는 사람이 공직을 수행하지만, 선거과정에서 나왔던 의미있는 소수의견도 무시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그동안 대의 민주주의하에서 무시되었던 많은 소수의견들이 주된 네트워크와 보완적 네트워크를 타고 조화롭게 공론화되는 모습은 SNS에서는 흔하게 나타난다. SNS가 주는 정치참여에 대한 재미는, 소수의견을 가진 유권자들에게도, 그들의 정보가 신뢰의 가치를 가진다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공론장에서 살아남아소통을 넘어서 실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SNS가 충분히 제 역할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법과 제도의 문제에 큰 원인이 있다. 현행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적인 네트워크에서 표현한 행위가, 우연한 사적 '영향력'과 결합되면 선거법이 금지하는 목표를 지향한 것으로 평가되어 불법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현재 국회의 모습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의 희망을 꿈꾸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기술, 산업, 그리고 서비스들의 발전으로 등장한 스마트 디바이스들과 SNS가 보여주는 장점들은, 선거와 관련된 정보의 유통 자체를, 유권자들이 사적 네트워크의 확장에 의한 공론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들고 재가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

에서 그치지 않고 2차적으로 오프라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은 원래 법적 목적과 이상에 맞게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온라인상의 수많은 SNS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더 이상 잠재적 범죄자로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기술과 디바이스의 발전 앞에, 법과 제도가 뒷받침만 해준다면 정치는 더욱 놀라운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참 고 문 헌

- [1] 권상희, “스마트 미디어와 SNS, 커뮤니케이션 행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전망”, 한국언론학회 2011 봄철정기학술대회
- [2] 금혜성, “정치인과 SNS활용”, 한국정당학회보, 제10권 제2호 2011.
- [3] 김유향, 조희정, “4·27 재보선과 SNS 참여의 의미”,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30호, 2011. 5. 4.
- [4] 김유향, 조희정, “10. 26 재보선에 나타난 SNS 문화와 선거제도의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315호, 2011. 10. 28.
- [5] 윤성이, “17대 대선에 나타난 온라인 선거운동의 특성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2호, 2008. 6.
- [6] Yochai Benkler, The Wealth of Networks, 2006.

● 저 자 소 개 ●



김 보 라 미
 2000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2009년~현재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석사과정)
 2009년~현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관심분야 : 방송통신정책, 지적재산권, 정보보호